

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종료신고서				처리기간
				즉 시
신 고 인	① 성 명		② 생년월일	-XXXXXXXX
	③ 주 소			
영 업 소	④ 종 류		⑤ 업 소 명	
	⑥ 소 재 지			
⑦ 종 료 일	년 월 일			
⑧ 사 유				
⑨ 분 실 사 유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식품위생법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을 그만하려고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고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</p>				
※ 구비서류: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증 1부				수수료
※ 안 내: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				없 음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